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19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김정호·신영대·전진숙

박 정 • 윤후덕 • 김동아

이연희 • 허종식 • 정성호

박희승 • 이훈기 의원

(119]

제안이유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 각 에너지 사업별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요 인·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도입의 안정성 및 LNG 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개별시 장이 아닌 전체 에너지 산업 관점에서 전력, 가스, 열 등 다양한 발전 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22년 기준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의 87%가 LNG 발전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가스요금은 전력거래가격 및 전기요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안정적운영을 위한 LNG 발전의 수급 조정기능이 확대되는 등 기존 에너지

사업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에너지 사업의 범위를 넘어 에너지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에너지 사업자 간 이해관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이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 내지 에너지 요금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자 간 다양한 이 해관계를 조정하여 에너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과 에너지 요금의 적정성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는 부재하여, 국가의 일관된 에너지 규제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함.

세계 주요국에서는 에너지부처와 별도로 의회와 정치로부터 법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의 기관이 에너지 관련 요금 및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일 관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 기·가스·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 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수립 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6조 및 제9조).
- 라.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명 령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 마. 사업자는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열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17조).
- 바.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교체·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음 (안 제2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821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2호) 및 제782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2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이하 "전기가스열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 다.

제4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를 "전기가스열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자원부정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를 "총리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1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계"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로,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를 "총리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 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정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 원회는"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를 "총리렁으로"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5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53조에 따라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을 "전기가스열위원회(제53조에 따라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가"로 한다.

제6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에너지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따른 사무는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행위 또는 전기가스열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법에 따라 전기가스열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	①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	가스열위원회(이하 "전기가스
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	<u>열위원회"라 한다)는</u>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협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	
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또	
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	
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 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 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공급대상지역을 지 정하려면 미리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 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u>총리령으로</u> 전기가스열위원 <u>회와</u>
 1. ~ 3. (현행과 같음)
② <u>전기가스열위원회는</u>

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급 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협의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정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저 허가 등) ①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

③
<u>총리령으로</u>
<u>전기가스열위</u>
원회에
<u>전기</u>
<u>가스열위원회는</u>
<u>총리령으로</u>
<u>.</u>
1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①
전기가스열위원회의

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하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생략)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열 생산 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 다.
- 1. ~ 3. (생 략)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 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대상지역에서 열 생산시설 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한 자 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허가) ① 사업을 하 제 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u>.</u>
②
<u>전기가스열위원회의</u>
③ (현행과 같음) ④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 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략)
- 4.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구역의 중복을 허용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 략)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산</u> <u>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한다.
-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기계시) ① 사업자는 산업통 산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구역별 또는 공급시설별로 그 기

<u>총</u>
리령으로
②
1. ~ 3. (현행과 같음)
4
<u>전</u>
기가스열위원회가
가.·나. (현행과 같음)
③
<u>총리</u>
<u> 령으로</u>
1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
의 개시) ① <u>전기가</u>
스열위원회가
<u>전</u>
<u>기가스열위원회는</u>

간을 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① · ② (생 략)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u>산업</u> <u>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u>산업통상자</u> <u>원부장관에게</u>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 제14조(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의 해산) ①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 員)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청산인은 지체 없이 <u>산업통</u> <u>상자원부장관에게</u>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제	12조(사업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	2
	③		
	령으로		<u>리</u>
	 전기가스열위원회		.——
제	 ④ (현행과 같음) 14조(사업의 휴업·폐업 및 인의 해산) ①		
	<u>전기가스</u> 원회의 ②	<u>-</u> 열	위
	<u>전</u> 스열위원회에		<u>가</u>
	③		

사업을 휴업한 사업자가 그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는 <u>산</u>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 6. (생략)
- ② (생략)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정지가 사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u>전</u>
<u>기가스열위원회에</u>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1
전기가스열위원회는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전기가스열위원회는</u>	
· ④	

밖에 필요한 사항은 <u>산업통상</u> 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의 권한이 시·도지사에 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 사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7조(공급규정) ① 사업자는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 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 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 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 로 본다.

<u>으로</u> . (5) 전기가스열위원회는	
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제17조(공급규정) ① <u>총</u> 리령으로 <u>전기가스열위원회에</u> 	
제17조(공급규정) ① <u>총</u> 리령으로 전기가스열위원회에 	
제17조(공급규정) ① <u>총</u> 리령으로 전기가스열위원회에 	
제17조(공급규정) ① <u>총</u> 리령으로 전기가스열위원회에 	
제17조(공급규정) ① <u>총</u> 리령으로 <u>전기가스열위원회에</u> 	
제17조(공급규정) ① <u>총</u> 리령으로 <u>전기가스열위원회에</u> 	
<u>리령으로</u> 전기가스열위원회에	
전기가스열위원회에 	
	<u> 리덩으도</u>
	<u>전기가스열위원회에</u>
<u>가스열위원회의</u>	전기
	가스열위원회의

-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 ⑤ (생 략)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 ① 열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열생산자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산업통상자</u> 원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

2	
	전기가스열위원 <u>전기가스열위원</u> <u>가</u>
제19: ①	~ ⑤ (현행과 같음) 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u>총리령으로</u>
	 (현행과 같음)
	전기가스열 원회에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정기가스옄위위회는

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조정 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는 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11조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u> <u>부장관이</u> 정하는 기간에 공급 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를 하지 아니하여 택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을 때
- 3. 제17조제2항에 따른 <u>산업통</u>
 <u>상자원부장관의</u> 고시요금 상
 한을 초과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때

4. ~ 6. (생략)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① 제18조에 따라 공급 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 는 사업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

 1. (현행과 같음) 2 <u>전기가스열위</u> <u>원회가</u>
4. ~ 6.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①
<u>총리령으로</u>

에 발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	
금 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서 사용자가 공	
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	
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	
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적	2
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u>총리령으로</u>
한다.	
제21조(기술기준) <u>산업통상자원부</u>	제21조(기술기준) 전기가스열위원
<u>장관은</u>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회는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이	
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	,,
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u>산업통상자</u>	<u>총리령으로</u>
<u>원부령으로</u>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그 밖에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 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④ (생 략)
-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 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u>산업통상</u> 자원부렁으로 정한다.

제23조(검사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공사의 공정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u>전기가</u>
스열위원회가
<u>전기가스열위원회의</u>
,
②
- <u>총리령으로</u>
<u>총리렁으로</u>
<u>전기가스열위</u>
<u>원회에</u>
③ · ④ (현행과 같음)
5
<u>총리령으로</u> -
 -1007/711 E) ①
제23조(검사 등) ①
초기러 6 그
<u>총리령으로</u>
전기가스열위원회의
<u> </u>
총리렁으
· <u>6435</u>

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공급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검사를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 에 지장이 없고 공급시설을 임 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 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이나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검사의 유효기간이 적힌 검사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

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u> </u>	<u>총리령</u>
으로	
	·
조금기가 사업이 이 첫 나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 ③	
<u>총리령으로</u>	
전기가스	<u>열위원</u>
<u>회의</u>	•
④ 전기가스열위원회는-	
5	
	<u>총</u>
리렁으로	<u>전</u>
기가스열위원회에	
	
·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① 사업자는 노후화된 열수송	①
관(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	전기가스열위
<u>부장관이</u> 정하는 시설을 말한	원회가
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u>산업</u>	총리령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u>으로</u>
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 시	
기, 교체기준 및 조치, 그 밖에	
안전진단 실시 등에 필요한 세	
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	
한 같다.	<u>.</u>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열	③
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제2항에	
따른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이행계	
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u>전기가스열위원</u>
<u>장관에게</u> 제출하고 이를 이행	<u>회에</u>
하여야 한다.	
제24조(확인점검) ① 산업통상자	제24조(확인점검) ① 전기가스열
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위원회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	

- 속 공무원에게 사업자의 사업 장에 출입하여 공급시설이나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 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 용시설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사용시설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시설의 설 치장소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검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 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 설 또는 증설하였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열 생산시설이나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 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u>.</u>
1. ~ 4. (현행과 같음)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④ (생략)

-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① 사업 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알리고,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한다.
 -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 검을 한 경우에는 <u>산업통상자</u> 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다.

④ (생 략)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① 사업
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
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①
<u>총리령으로</u>
②
<u>총리령</u>
으로
·
③
<u>총리령으로</u>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①
키키키 가서 이 이 되 .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중 (公衆)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교체·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생 략)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의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 한) ① · ② (생 략)

<u>.</u>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제27조(안전관리규정) ①
<u>총리령으로</u>
<u>전기가스</u>
<u>열위원회에</u>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제32조의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
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일	
인이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동일인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비율을 충족하도	
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생 략)	
세43조(감독 등) 산업통상자원부	
<u>장관은</u>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	
여 지도・감독한다.	
1. ~ 5. (생 략)	
세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① (생 략)	

- ① (생 략)
 ② 집단에너지시설 중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
 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
-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 가등의 의제) ① 제22조제1항 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

에 따른다.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④ (현행과 같음)
제	43조(감독 등) 전기가스열위원
	<u>———</u> 회는
	
	<u>.</u>
	· 1. ~ 5. (현행과 같음)
제	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I) (9 94 F 5)
	② <u>총리령</u>
	② <u>총리령</u>
	② <u>총리령</u>
	② <u>총리령</u>
제	② <u>총리령</u> <u>으로</u>
제	② <u>총리령</u> <u>으로</u> 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
제	② <u>총리령</u> <u>으로</u>

인·지정·협의·신고 또는 면 허(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 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 다.

- 1. ~ 18. (생략)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 조에 따라 사업자의 공사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 자

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열생산자의 영업소·사업소나 그 밖의 사

<u>전기가스열</u> 위원회가
1. ~ 18. (현행과 같음)
② <u>전기가스열위원회는</u>
 <u>전기가스열위원회의</u>
제50조(검사) ① <u>전기가스열위원</u> <u>회는</u>

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51조(청문)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 다.
- 제52조(수수료) 제23조에 따라 검 사를 받으려는 자는 <u>산업통상</u> <u>자원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 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53조에 따라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 사를 말한다)이 부과·징수한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청문) <u>전기가스열위원회는</u>
제52조(수수료) <u>총리령으</u> <u>총리령으</u> 로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가스열위원회(제53조에 따라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가